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2월 17일
- 나. 발 의 자: 윤준용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준용 의원)

-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안 제5조)
 -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 자립지원센터 등(안 제7조)

○ 자립지원협의회(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사업과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센터와 자립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로써,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한 청소년 등은 보호단절에 따르는 심리적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을 사료할 때,

○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준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15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의자 : 윤준용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사업(안 제5조)
- 나.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 다. 자립지원센터 등(안 제7조)
- 라. 자립지원협의회(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퇴소청소년 등의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4.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등을 통하여 보호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